

英 國

—設計權(반도체 配置設計)1989年 規則— 〈1989.6.29〉

第1條(通稱 및 實施)

本 規則은 設計權(반도체 配置設計)에 관한 1989年 規則이라 稱하며 1989年 8月 1日字로 施行된다.

第2條(定 義)

(1) 本 規則에 있어서

“法”이란 著作權, 意匠 및 特許 1988年法을 말한다.

“반도체 製品”이란 그 目的 또는 그 目的中의 하나가 전자적 機能의 수행이고,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기관으로 構成되고, 이 기관중 적어도 하나가 반도체로 構成되며, 그 機能 또는 다른 機能에 관한 形狀이 그 반도체내에 또는 반도체상에 고정된 製品을 말한다.

“반도체 配置設計”란 法 第213條(2)項의 범주에 속하는 設計로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設計를 말한다.

(a) 내부 또는 표면에 고정됐거나 고정시키 고자 하는 形狀

(i) 반도체 製品의 기관, 또는

(ii) 반도체 製品의 製造用 기관, 또는

(b) 서로 관련된 반도체 製品의 기관의 내부 나 표면에 고정됐거나 고정시키하고자 하는 形狀의 配列

(2) 기타 관련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本 規則들은 法의 第Ⅲ部(設計權)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第3條(著作, 意匠 및 特許 1988年法, 第Ⅲ部の 適用)

반도체 配置設計와 관련된 設計에 대한 上記 法의 適用에서, 法의 第Ⅲ部는 아래의 規則 第4條 내지 第9條에 따른다.

第4條(資 格)

(1) 法의 第213條(5)項은 아래의 (2)項내지 (4)項에 준하는 効力을 갖는다.

(2) 法의 第Ⅲ部는 法 第217條에 대해 다음의 것으로 대치되는 경우 効力이 있다.

“第217條-1) 本部에 있어서 ‘適格人’이란 適格한 國의 시민이거나 또는 그 國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適格者’란

(a) 適格人

(b) 適格한 國이 Gibraltar에 營業地를 갖고 그곳에서 실질적인 營業行爲를 하고 있는 法人體나 기타 法人格을 갖고 있는 團體, 또는

(c) 設計權(반도체 配置設計) 規則 1989年의 附錄 第Ⅰ部에 明示한 追加部類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本部에 있어서 適格者에 대한 조회는 다른 適格한 國의 政府와 君主가 한다.

3) 本 條項에 있어서 ‘適格한 國’이란

(a) EEC의 다른 會員國을 말한다.

4) ‘適格人’의 定義에서 適格한 國의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한 조회는 英國과 관련하여 영국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한 조회를 하듯이 한다.

5) 어떤 나라에 營業地를 갖고 실제적 營業行爲를 하든 하지 않든 ‘適格者’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할 때는 그 國 이외의 지역에서의 商品 去來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3) 반도체 配置設計가 委託에 의한 發明이거나 職務中 發明된 것이고 配置設計士가 (下記의 規則 第5條로 대치된) 法 第215條에 의거 그 配置設計에 대한 設計權의 첫번째 所有者가 되는 경우, 法 第219條는 適用되지 않으며 委託이나 職務中의 發明과는 무관한 것처럼 法 第218條(2)項내지 (4)項이 適用된다.

(4) 法 第220條는 아래의 規則 第7條에 종속되며 (1)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대치되었다.

“第220條-1) 第218條나 第219條 設計權 반도체 配置設計 1989年 規則 第4條(3)項으로 修正되었음)나 上記 規則 第4條(3)項의 設計權 保護條項에 미달하는 設計는

(a) 그 設計로 만들어진 제품의 첫시판이 EEC의 모든 會員國의 市場에 그 製品들을 내놓도록 獨占權을 위임받은 適格者에 의해 行해진 경우, 그리고

(b) 會員國의 地域內에서 이루어진 경우 設計權에 대해 保護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英國에서’라는 말이 생략됐어도 第220條(4)項은 効力이 있다.”

第5條(設計權의 所有)

法の 第Ⅲ部는 法 第21條가 다음과 같이 대치되는 경우 効力을 가진다.

“第215條-1) 委託에 의한 것이거나 業務中에 이루어진 設計가 아닌 경우 設計者가 그 設計權의 첫번째 所有者가 된다.

2) 設計가 委託과 관련하여 創造된 경우 그 設計를 委託한 사람이 서면계약에 따라 設計에 대해 設計權의 첫번째 所有者가 된다.

3) 上記 (2)項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업무중 雇傭人에 의해 創造된 경우 서면계약에 따라 그의 被雇傭人이 첫번째 所有者가 된다.

4) 設計가 第220條(設計權(반도체 配置設計) 1989年 規則 第4條(4)項으로 修正되었음)에 의한 設計權 保護의 대상이 되는 경우, 上記의 條項들은 適用되지 않으며 上記規則의 規則 第7條에 따라서 문제의 製品을 去來한 者가 그 設計에 대해 첫번째 所有者가 된다.”

第6條(存續期間)

(1) 法の 第Ⅲ部는 法 第216條가 다음과 같이 대치된 경우 効力을 가진다.

“第216條-반도체 配置設計에 대한 設計權은—

(a) 그 配置設計나 配置設計에 의해 만들어진 製品이 設計權所有者와의 協約下에 처음으로

로 販賣 또는 임대로 이용된 年의 마지막날(12月 31日)로부터 10年이 되는 날에 만료되며,

(b) 그 配置設計와 그 配置設計에 따라 만들어진 製品은 그 配置設計가 설계서류에 처음으로 記錄된 때 또는 그 配置設計에 따라 製品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때로부터 15年 이내에 使用되지 않은 경우, 그 초기시점에서 15年째 되는 年의 마지막 날에 滿了한다.”

(2) 法 第263條의 (2)項은 ‘製品과 관련하여’라는 말뒤에 ‘또는 반도체 配置設計’라는 말이 삽입되는 경우 그 効力을 가진다.

(3) 上記 (1)項에서 規定된 대치條項은 아래의 規則 第7條에 따른다.

第7案(秘密의 保障)

法 第214條(4)項, 第216條 또는 第220條(本規則에 의해 修正되었음)의 취지대로 販賣가 있었는지 또는 販賣나 임대를 위한 行爲가 있었는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販賣나 임대 또는 판매나 임대에 대한 제의나 공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a) 판매나 임대용으로 판매됐거나 임대된 또는 제안됐거나 공개된 製品이나 반도체 配置設計가 (秘密保障의 義務가 있든 없든) 前述한 이유대로 販賣되거나 임대되지 않았다면, 또는

(b) 무기, 탄약 또는 전쟁용품과 관련하여 그 秘密保障을 위해 英國 이외의 나라의 君主나 政府의 命令으로 그런 義務가 賦課된 것이 아니라면—이것은 문제의 반도체 配置設計에 관한 情報에 대하여 秘密保障의 義務에 따른다.

第8條(侵害)

(1) 法 第226條는 (1)項이 다음과 같이 대치되는 경우 効力을 가진다.

“第226條-1) 1A항에 따라 設計의 所有權者는 그 設計를 使用하는데 獨占權을 갖고,

(a) 그 設計에 따라 製品을 製造하거나,

(b) 그러한 製品을 製造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記錄하고 있는 설계서류를 만든다.

(1A) (1)項은 다음에 適用되지 않는다.—

(a) 非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個人的인 設計

의 사용, 또는

(b) 그 設計을 分析 또는 評價를 目的으로 하는 使用이나 그 設計에 內포되어 있는 技術이나 개념, 과정, 구조를 分析, 評價, 教育을 目的으로 하는 使用.”

(2) 法 第227條는 문제의 製品이 다음의 地域內에서 먼저 販賣됐거나 임대된 적이 있는 경우 適用되지 않는다.

(a) 문제의 반도체 配置設計에 대한 設計權의 所有者의 許諾下에 英國, 또는

(b) 그것을 輸入하거나 또는 판매·임대의 權利를 賦與받은자의 同意下에 EEC의 다른 會員國이나 지브랄타의 地域.

(3) 法 第228條(6)項은 適用되지 않는다.

(4) 다음의 경우는 반도체 配置設計에 대한 設計權의 侵害가 아니다.

(a) 原配置設計의 分析 또는 評價나 거기에 內포된 技術이나 구성, 과정 또는 개념의 分析· 評價의 結果로 얻어진 또다른 원반도체 配置設計, 또는

(5) 반도체 配置設計 전체에 대하여 그 권리의 침해를 構成하는 것은 配置設計의 要部에 대해서도 그 權利의 侵害가 된다.

第9條(實施許諾)

法 第237條는 適用하지 않는다.

第10條(削除 및 假條項)

(1) 반도체製品 規則1987(配置設計의 保護)는 本條에 의해 削除된다.

(2) 法의 附錄 I의 第19條(1)項은 1987年 11月 7日과 1989年 1月 31日 사이에 創造된 配置設計에 대해서는 適用하지 않는다.

(3) 1987年 11月 7日 이전에 創造된 반도체 配置設計와 著作權의 出願時, 上記의 第19條 (2)項은 第237條 내지 第239條의 내용이 第238

條와 第239條에 대한 내용일 경우 効力을 가지며, 따라서 第19條(3)項은 그와같은 著作權에 適用하지 않는다.

附錄(規則 第4條(2)項)

—適格者의 追加條項—

第 I 部

〈追加條項의 記述〉

1. 英國國의 市民

2. 下記의 第 II 部 또는 第 III 部に 明示한 國의 市民

3. 아래의 第 II 部나 第 III 部に 明示한 國의 거주민, 맨섬(the isle of man), 해협제도(the channel islands) 또는 그 植民地.

4. 英國, 지브랄타, EEC의 다른 會員國 또는 아래의 第 II 部나 第 III 部に 明示된 國중 실질적인 營業行爲가 行해지고 있는 營業地가 있는 나라의 法令 및 또는 地域法에 의거 設立된 會社 및 法人體

第 II 部

〈明示된 國의 市民, 居民, 法人體 및 其他 法人格이 있는 團體〉

일본, 스위스, 미국

第 III 部

〈明示된 國의 市民 및 居民만〉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해외령(프랑스, 폴리네시아, 프랑스남부 및 북극지역, 메이요트, 뉴칼레도니아와 종속령, 세인트피에르와 미켈론, 윌리스와 푸투나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

〈白仁洪記〉

신간	발명入門	규격 : 국판 234면
		가격 : 3,500원
		발간 : 한국발명특허협회